

운영규정의 개요

1. 이용대상

재가 서비스 이용대상	-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 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	-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재가 서비스 표준 수가 (2026년)	-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원) <table><tr><td>등급</td><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d>5등급</td></tr><tr><td>한도액(원)</td><td>2,512,900</td><td>2,331,200</td><td>1,528,200</td><td>1,409,700</td><td>1,208,900</td></tr></table>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원) <table><tr><td>제공 시간</td><td>30분 이상</td><td>60분 이상</td><td>90분 이상</td><td>120분 이상</td><td>150분 이상</td><td>180분 이상</td><td>210분 이상</td><td>240분 이상</td></tr><tr><td>수가</td><td>17,450</td><td>25,320</td><td>34,120</td><td>43,430</td><td>50,640</td><td>57,020</td><td>63,530</td><td>70,080</td></tr></table>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제공 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제공 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이) 전액 부담한다.																														

3.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나 신원인수인의 욕구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불가 영역	-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장기요양보험법상(제28조의2) 금지되어 있음.
비용의 부담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기관정보

기관명	풍기노인재가센터	기관유형	방문요양
-----	----------	------	------

2. 재가 방문요양 급여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며,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목적	-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사회복지 사업법, 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수급자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정에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정서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인지관리지원(인지행동변화관리)등을 제공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목욕 준 비에서부터 목욕실시, 옷 갈아입히기, 손, 발톱정리, 목욕전후 상태변화 관찰포함) -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서비스 실시 - 인적·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등에 힘씀.

3. 서비스의 내용의 절차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대표)가 수급자 가정에 사전 방문 해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기록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제공계획/통보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계약을 체결 후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제공계획을 작성·수립하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린 후 공단에 계약 내역을 통보
서비스 제공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일정표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제공하며, 담당 요양보호사는 일정표에 따라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생활환경을 체크하고 급여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 또는 RFID태그 전송내역에 자세하게 기록·작성
수급자관리	작성한 급여 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제공하며, 수급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수급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